

행자부, 특별법 적용 옥외광고물 철거 가속화

- 협회 대책회의 갖고 행사부에 광고주 의견 반영토록 촉구

옥외광고물특별법에 적용되는 총353기의 옥외광고물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의 시한이 작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353기의 옥외광고물을 2월 말까지 일체 철거하려 했으나 매체사의 반발과 소송으로 지금까지 연기되어왔다. 그러나 소송건수의 대부분이 기각 결정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한다는 것이 행사부의 방침이어서 특별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옥외광고 대체법안에 대한 행사부 입장 확고해

행사부는 지금까지 매체사에 자진 철거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4월 9일 이후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와 제10조에 의거, 해당업체에 2천만원의 벌금, 그린벨트내 광고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발조치는 없었으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부는 향후 일반법으로 옥외광고 사업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4월중 대체법안의 국회이결을 마친 뒤, 새로운 옥외광고 발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한 연구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부 생활여건개선팀의 박성호 팀장은 "향후 일반법에 의한 옥외광고 허가제 도입 계획은 변함없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옥외광고는 일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실무협의를 끝난 상태"라고 말하며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과 보좌관들과도 협의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또 "앞으로는 옥외광고도 광고효과에 따라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이런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할 옥외광고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사업 진행에 대한 행사부 장,차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주 면책 위해서 매체사에 광고중지요청 문서화

한편 이와 관련해 광고주에게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소송 등으로 철거가 지연되는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새로운 제도하에서 기득권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대체법안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처리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행사부 입장은, 우선 철거 지연에 따른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정확한 것은 법원판결을 받아보아야 하지만 일단 광고주에게 공문을 통해 불법광고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광고물에 광고를 하는 행위는 형사상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는 광고중지요청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매체사에 보낼 것을 권

고했다.

기존 광고주의 기득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광고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형태로 옥외광고를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아래서 원칙에 따른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법안이 지연될 가능성과 새로운 특별법으로 또다시 옥외광고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행사부의 입장은 대체법안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사부장관 이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열린우리당 손봉숙 의원의 입법안에서 국제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옥외광고 시스템 광고주 의견 반영토록

협회는 지난 4월 4일 이와 관련해 회원사 옥외광고 담당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광고주는 해당 옥외광고에 대한 광고비 지급 중지와 광고물 삭제 여부를 결정해,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내용증명으로 해당 옥외매체사에 발송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으로는 협회 차원에서 행사부에 건의문을 보내, 1984년 이후 광고주들이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금조성에 적극 협조한 점을 환기시키면서 광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합리적인 옥외광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광고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 특별법 등으로 광고사업을 허가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향후 옥외광고I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취재 | 이수지

옥외광고, 더 이상 기금조성 위한 특별법은 없다

- 행사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성호 팀장 일문일답

다음은 지난 3월 29일 행사부 생활여건개선팀의 박성호 팀장을 초청해 가진 광고주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광고주는 이미 매체사와 2-3년 장기계약이 돼있는데 이번 일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A. 불법광고에 대한 계약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체 법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일부 소송중이거나 승소한 업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광고로 단정